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70 |
|----------|-----|

제출년월일 : 2023.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시개방화장실의 개방 예외 사유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항목 추가(안 제4조의2~제4조의3)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유지·관리기준 규정(안 제7조, 제9조)

라. 개방화장실의 상시개방 적용 예외 사유 마련(안 제10조)

마. 별지 및 별표 수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7. 19. ~ 2023. 8. 7.)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7. 17. 기획실)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2023. 7. 19. 가족복지과)

- 반영계획서(불수용) 제출(2023. 7. 19. 환경과)

※ 안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 반영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단,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법 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곳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 대한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설치 및 그 밖에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지(또는 자동판매기)·세정제·방향제·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의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도색을 실시할 것
4. 안전관리시설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5.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할 것

제10조(개방화장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상시 개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동절기 수도 등 시설의 동파, 잦은 기물파손 및 수리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3.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하는 경우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자가 영 제8조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시개방화장실(24시간) 또는 정시개방화장실(일정시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영 제10조 규정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따로 구분된 화장실 설치
2.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 도구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 부착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3조(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별지 2호 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금액을 초과한 사용료를 징수하
여서는 안된다.

제1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
호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 | | | | | | | | | | | | |
|--|--|-----------|------------------|-------------|---------------|---------------------|-------------|----------------------|--------------|-------------|-----|----|
|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전 경 사 진</p> | | | | | | | | | | | | |
| 소 재 지 | | | | 화장실 명칭 | | | | | | | | |
| 지역구분 | | | | 설 치 년 도 | | 관리책임 공 무 원 | | 소 속 | | | | |
| 설 치 및 관리주체 | | 설치주체 | | | | | | 직 급 | | | | |
| | | 관리주체 | | | | 성 명 | | | | | | |
| 관 리 인 | | | | (전화번호 :) | | | | 월평균 이용인원 | | | | |
| 규 모 | | 부지 (㎡) | 화장실 면적 (㎡) | 대변기 수 | | | 소변기 수 | | 대변기유형 | | 사용료 | |
| | | | | 남 | 여 | 장애인 | 성인용 | 유아용 | 동양식 | 서양식 | 유료 | 무료 |
| 편의시설 내역 | | 세면 시설 | 난방 시설 | 냉방 시설 | 환풍기 | 화장지 (자 동 판매기) | 비누 | 수건 (에어 타올) | 탈취제 (방향제) | 청소도구함 | | 기타 |
| | | | | | | | | | | 내부 | 외부 | |
| 시설관리 내역 | | 연월일 | 관리 사항 | 금 액 (천원) | 연월일 | 관리 사항 | 금 액 (천원) | 연월일 | 관리 사항 | 금 액 (천원)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 | 지정 여부 | 비상벨 (설치수) | | CCTV (설치수)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3호 서식]

| | | | | | | | | |
|--|---------|----------|-----|-----------------|-------|-------|--------|-----|
|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 | | | | | | | |
| 대 표 자 | 상 호(명칭) | | | | | | | |
| | 성 명 | | | | | | | |
| | 주 소 | | | | | | | |
| 관 리 인 | | (연락처 :) | | | | | | |
| 시 설 내 역 | 시 설 내 역 | 대변기 수 | | | 소변기 수 | | 대변기 유형 | |
| | | 남자용 | 여자용 | 장애인용 | 성인용 | 유아용 | 동양식 | 서양식 |
| | | | | | | | | |
| | 편 의 시 설 | 세면시설 | |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 | 환 풍 기 | | |
| | | 대 | | | 대 | | | 대 |
| 1회 사용료 | | 원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평 창 군 수 인</p> | | | | | | | | |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 반 사 항 | 근거조항 | 부 과 금 액 | | |
|--------------------------------------|----------------|---------|-----|-----|
| | | 1차 | 2차 | 3차 |
|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 법 제21조 제1항 | 100 | 150 | 200 |
|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 | |
|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20 | 40 | 60 |
|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10 | 20 | 30 |
|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 | | |
| 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 | 10 | 20 | 30 |
| 나. 법 제11조 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 | 20 | 30 | 40 |
|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 | | |
|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 | 20 | 40 | 60 |
|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 | 10 | 20 | 30 |
|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 10 | 20 | 30 |
|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 법 제21조 제3항 | 5 | 10 | 20 |

관계 법령 발취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 개정(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생활공간정책과, 2023. 6.]

I 개정 개요

□ 개정내용

-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법 개정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목적 문구 수정 : 단순·명확한 정의 반영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 추가
 - ⇒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2021.7.20.)
 - ⇒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준수사항 확대
 - :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장비의 대여조항 신설, 관리인 교육 범위 신설
 - ⇒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
 -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문이동 현행화 및 용어 정비
 -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지정여부 및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종류 및 설치 댓수가 관리되도록 「별지 1」 반영

II

주요 개정 사항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p>책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① <u>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
| <p>안전관리 시설의 설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① <u>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u> 2. <u>시장·군수·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u> 나. <u>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u>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u> |
| <p>신고체계의 마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u>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p><u>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u></p> |
| <p>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u> |
| <p>개방화장실의 지 정·운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①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 (변경) <u>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신설) <u>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 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u> |
| <p>기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1호 서식」 (신설) <u>안전관리시설 지정 및 설치내역</u>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 |
|-----|--------------------------|
| 작성자 | 평창군 경제건설국 환경과 환경과장 전 원 표 |
| 연락처 | (033) 330 - 2340 |